(사)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위임전결 규정 개정(안)

제정 2016. 6. 23
개정 2017. 8. 21

제1조(목적)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기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이 규정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규정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 (전결사항)

① 사무처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.

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③ 당해 업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재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차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.

제4조 (전결권자의 부재시 처리)

전결권자가 궐원, 출장,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 (전결사항의 특례)

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전결권자가 위임전결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 (책임과 권한)

전결권자가 그 전결한 사항은 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.

제7조 (결재위반 여부의 확인)

문서 통제자는 이 규칙의 전결구분에 의한 결재 또는 합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8조 (효력)

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회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회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8.21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개정내용)

〈별표〉의 위임 전결 업무 내용 중 예산집행 내용 추가

<별표>

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

일련번호	업 무 내 용		회장 결재	전결권자 사무처장
1	각종사업	기본계획수립	○	
2	회의소집	시·도협회장	○	
		시·도협회 사무국장		○
3	규정 등의 해석 및 질의응답			○
4	진정 및 건의사항의 처리	중요한 사항	○	
		경미한 사항		○
		자료요구 및 회신		○
5	감사업무	시·도협회 특별감사 실시 및 결과 보고	○	
		감사결과 시정조치 지시		○
		각종자료 제출		○
6	일반서무	문서보존 및 폐기		○
		회원증, 지도자증 발급 및 확인 업무		○
7	인사 및 복무관리	직원의 임용	○	
		휴가계획		○
		근태관리		○
		각종 포상 및 표창	○	
8	기본방침에 의한 각종 자금배정			○
9	기본방침에 의한 자금전도 및 정산			○
10	기본방침에 의한 금전 집행			○

11	시·도 협회 인준, 규정 및 조직관리 업무		임원의 선임, 인준, 취소	○	
			임원의 관리		○
			규약의 제정,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	○	
			시·도 협회 자료, 현황 파악 및 분석		○
12	홍보 종합계획 수립			○	
13	홍보 종합계획 운영 업무				○
14	정기 간행물 등 홍보물 발간				○
15	보도 및 언론과 관계된 제반 업무				○
16	각종 자료관리 및 운영업무				○
17	*예 산 집 행*	*일반사업비*	*100만원 초과*	○	
			100만원 이하		○
		업무추진비(회의비)	*100만원 초과*	○	
			100만원 이하		○
		시설유지 및 보수비	*100만원 초과*	○	
			100만원 이하		○
		구매, 인쇄, 수리, 제조 요구서	*100만원 초과*	○	
			100만원 이하		○
		지출결의서			○
		수입결의서			○